

# 공사 입찰 공고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제한경쟁-지역제한/단독계약/총액입찰/장기계속/적격심사)

|                  |  |             |                       |
|------------------|--|-------------|-----------------------|
| 건명               | 신월2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             |                       |
| 총사업비             | 금9,384,016,000원  | 관급자재비       | 금1,029,956,000원       |
| 기초금액             | 금8,354,060,000원(부가세 포함)<br>(1차: 3,800,000,000원)  | 추정가격        | 금7,594,600,000원       |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1차: 13개월)  |             |                       |
| 공사개요             | • 공사위치: 양천구 신월2동 482-11<br>• 건립규모: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3,349.09㎡<br>※ 자세한 사항은 별첨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조   |             |                       |
| 입찰서접수<br>개시일시    | 2026. 7. 8.(수) 20:00   | 입찰서<br>마감일시 | 2026. 8. 10.(월) 10:00 |
| 개찰일시             | 2026. 8. 10.(월) 11:00  | 개찰장소        | 양천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
| 현장설명 및<br>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등에 대문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 열람 또는 담당자 문의 후(☎02-2620-3564) 투찰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             |                       |

※ 본 공사는 ‘종합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설계안의 외형이 복잡하여 작업의 난이도가 높아 종합적인 계획, 관리·조정이 필요하므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 입찰참가시 주의 사항(필독)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344호, 2025.12.1.시행)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이 변경되었으니, 본 공고의 A(국민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계액)를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text{<별표2> 입찰가격 평점산식 평점(점)} = 50 - 2 \times \left( \frac{90}{100} - \frac{(\text{입찰가격} - A)}{(\text{예정가격} - A)} \right) \times 100$$

※ 본 공고의 입찰가격 평점산식의 A값 =415,124,942원

- 입찰가격 평점산식(A 반영)에 관한 문의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 입찰참가자격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체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을 등록하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나. 본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한 업체에 한합니다.
- 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라.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 3. 입찰방법 :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합니다.
-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라.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4. 입찰참가수수료 : 없습니다.

##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이며,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의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작성되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대비 직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당해공사 수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낙찰하한율은 난이도 계수 및 'A값'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마.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추정가격이 100억 원 미만 5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 바. 수행능력 평가 중 시공경험 평가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업종은 **건축공사업 100%(추정가격 7,594,600,000원)**입니다.
- 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른 평점 합계 × 10/12로 평가하며, 심사항목 ①의 평점 등급은 「직접시공 평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합니다.

| 만점 비율 변경(30% → 20%)           |                     |     |
|-------------------------------|---------------------|-----|
| ① 계약상대자가 입찰금액 대비 직접시공할 금액의 비율 | A : 20% 이상          | 6.0 |
|                               | B : 15% 이상 ~ 20% 미만 | 5.0 |
|                               | C : 10% 이상 ~ 15% 미만 | 4.0 |
|                               | D : 5% 이상 ~ 10% 미만  | 3.0 |

- 아. 기초금액 기준 공종별 직접노무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 종                  | 금액 (단위 : 원)   |
|----------------------|---------------|
| 01신월2동 주민센터 건립공사     | 2,387,492,078 |
| 0101 건축공사(소계)        | 1,654,674,955 |
| 010102 가 설 공 사       | 191,113,467   |
| 010103 토 및 지정공사      | 6,283,419     |
| 010104 철근콘크리트공사      | 726,023,364   |
| 010105 DECK PLATE 공사 | 29,028,180    |
| 010106 철 골 공 사       | 7,218,797     |
| 010107 캐 노 피 공 사     | 13,685,264    |
| 010108 조 적 공 사       | 9,436,114     |
| 010109 돌 공 사         | 5,022,217     |
| 010110 타 일 공 사       | 45,883,469    |

|        |                  |             |
|--------|------------------|-------------|
| 010111 | 목공사및수장공사         | 119,088,984 |
| 010112 | 방 수 공 사          | 89,388,483  |
| 010113 | 지붕 및 홈통공사        | 686,350     |
| 010114 | 금 속 공 사          | 45,080,078  |
| 010115 | 세라믹판넬공사          | 111,179,000 |
| 010116 | 미 장 공 사          | 41,151,201  |
| 010117 | 창 호 공 사          | 22,439,500  |
| 010118 | 유 리 공 사          | 64,492,830  |
| 010119 | 철 공 사            | 71,746,468  |
| 010120 | BIPV 태양광발전 하지틀공사 | 22,800,800  |
| 010121 | 기 타 공 사          | 8,809,770   |
| 010122 | 주변옹벽 보수공사        | 10,933,200  |
| 010123 | 정 화 조 공 사        | 13,184,000  |
| 02     | 토목공사             | 683,489,542 |
| 03     | 조경공사             | 49,327,581  |

자.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시 [별표 1] 4-라. 공사종류별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난이도 계수표에 따른 등급은 C등급 ‘④ B등급이외의 건축공사’를 적용하며 기준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 분 | 노무비      | 기타경비    | 일반관리비   | 이 율     | 난이도계수 |
|-----|----------|---------|---------|---------|-------|
| 기준율 | 33.7802% | 3.7934% | 4.9813% | 6.7326% | 0.9   |

- 차.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적격심사 자료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하도급관리계획 등의 적정성 및 자재와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 평가대상 공사이므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카.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신용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한다.
- 타.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경우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천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포) ‘제8장 입찰 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같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공사(용역)의 낙찰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약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11. 보험료 및 법정 정산과목에 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아래의 국민건강·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구 분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     | 퇴직공제부금비      |
|-----|---------------|---------------|--------------|--------------|
| 합 계 | 금85,830,339원  | 금113,405,873원 | 금11,278,106원 | 금54,912,316원 |
| 건 축 | 금59,485,564원  | 금78,597,060원  | 금7,816,403원  | 금38,057,523원 |
| 토 목 | 금24,571,449원  | 금32,465,753원  | 금3,228,688원  | 금15,720,259원 |
| 조 경 | 금1,773,326원   | 금2,343,060원   | 금233,015원    | 금1,134,534원  |
| 구 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품질관리비        |              |
| 합 계 | 금129,481,196원 | 금16,896,372원  | 금3,320,740원  |              |
| 건 축 | 금91,605,631원  | 금16,896,372원  | 금3,320,740원  |              |
| 토 목 | 금33,783,071원  | -             | -            |              |
| 조 경 | 금4,092,494원   | -             | -            |              |

나. 설계내역서에 반영된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 등 법정 정산과목은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에 따라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하며, 발주처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요구 할 수 있습니다.

-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6] 을 따릅니다.
- 안전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국토부 고시)」 제46조~제54조의 규정을 따릅니다.(사후 정산)
-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해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전비,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12.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관련 사항

- ※ 적용대상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전기,통신,문화재 공사 포함.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 발주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 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합니다.
-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급여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1억 원 이상의 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을 따릅니다.

## 13.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안내

-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건설공사의 직접시공)에 의거 직접시공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부서에 직접시공계획서를 2부 제출**하기 바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30% 이하의 과징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계약 통보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별도계좌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 15. 하도급계약 관련 사항

-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시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가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하도급자)와 협의하여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단,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낙찰자가 선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선금을 전액 정산하지 않는 이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불가하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를 한 이후 선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기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는 해지됩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불공정·부당특약 내용 유무를 확인 후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를 발주부서에 제출
-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최신호)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 라.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마.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추정가격 30억 이상 공사는 적격심사 때 하도급 관리계획서를 평가하므로 반드시 제출하여야(변경 시 제출 포함) 하며, 미제출 및 계획서 위반할 때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6. 『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 가.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의무 사용 대상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약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약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약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9항에 의합니다.
- 나.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다.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사용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직불합의가 아니므로, 직불합의로 오인하여 직불합의서 및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 17.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관련사항

- 가. 건설현장에서 장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의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ftc.go.kr>) 정보공개>표준계약서>표준약관>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제10059호)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이하 "현장별 보증서"라 한다)를 그 공사의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기계 대여업자는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현장별 보증서를 발급한 보증기관에 그 건설기계 대여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직접 대여대금을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대여업자가 합의(직불합의)한 경우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

## 18.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문의: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3708-2382, 2387)

## 19.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 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에 따릅니다.

## 20.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만 해당)

- 가.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감독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21. 계약이행 특수조건

양천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구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3) 사업(면허)양도·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 9) 하도급의 승인 등

-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 11) 노무비 지급상한

-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 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 12) 선금의 사용

-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 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 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 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구청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14)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 동안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 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합니다. 단, **직업소개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선지급한 경우, 직업소개사업자로 지급대상을 변경**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 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22. 입찰 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 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설명 자료의 구성내용

- 입찰공고문, 공사설명서, 공사시방서, 물량내역서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최신포)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포)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서울특별시 예규 최신포)

## 23. 정보제공처

가. 입찰집행 및 계약 : 양천구청 재무과(02-2620-3228)

나. 발주부서(입찰자격, 사업내용 등) : 양천구청 건축과(☎02-2620-3564)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개찰결과

## 24. 기타사항

가.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나. G2B전자입찰시스템의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신규등록→조달업체이용자→신규이용자등록에서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분임)재무관